

76. 事業報告 및 77年度 事業計劃

總務理事 朴 成 圭

지난 11月 2日 開催된 第11回 定期総会를 계기로 協会는 새로운 座標를 設定하는 일
대 轉換期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10年間 全国會員의 紛糾 어린 奉仕와 積極的 인 參與 및 協助로 特殊法人体로서의
基盤을 確固히 構築한 協会는 이제부터는 名實共의 会員을 위한 協会로서의 使命을 完
遂하고 会員을 위한 奉仕機能을 야김없이 發揮하여야 할 때라고 生覺하는 것이고 이하
한前提下에 77년도 事業計酬을 짜고 어를 뒷받침할 새해 統合予算을 編成, 総会에 付
議하였던 것입니다.

協会設立 11年만에 처음갖는 統合予算이기에 予算編成 実務를 担当 했든 任職員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苦衷이 있었고 統合予算編成執行의 참뜻을 구현하는데 細心한 配慮
와 努力を 傾注했던 것만은 事実이지만 未洽한 点이 한두 곳이 아니었으나 会員任들의
幅넓은 理解와 協会의 앞날을 내다보는 長期的 眼目에 依한 斷案으로 統合予算案은 総
会의 承認을 얻게 되었든 것입니다.

協会任員의 一員으로서 거듭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総会 때에는 위나 韶은 時間 인지라 重要한 事業計酬이면서도 充分한 内容説明
을 드릴機会를 갖지 못하였기에 会誌를 通해 会員 여러분들에게 새해 事業計酬을 알려
드리면서 協会의 確固한 事業遂行指針과 또한 이의 実現을 위한 協会任職員의 굳은 決
心을 아울러 伝해 드리고자 합니다.

事業計酬 紹介와 더불어 今年 1年間 協会가 걸어온길을 事業実情 및 業務報告를 通
해 결들여 会員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事業実績 및 業務遂行 実績에 对한 冷徹한 批判으로 協会의 잘잘못을 가려
협회를 鞭撻해주시고 協会의 새진로設定에 많은 參考資料와 苦言을 付託드립니다.

1. 1976년도 사업실적보고

(76. 1. 1~10. 10)

사업명	세부계획	시행기간	사업실적 및 수행내용
1. 조사연구사업	(1) 5개년종합계획수립 (2) 각 시도의 건축행정 실태조사 및 시정 전의	76. 7. 20~7. 26 76. 7. 20~7. 26 76. 6. 18 76. 8. 12 76. 8. 31 76. 1. 19 76. 2. 4 76.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 개최 ○ 5개년 계획수립 소위원회 구성 ○ 4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지부 및 분소 운영실태를 조사(서울·부산·충북·전북·경북·경남) ○ 5회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77년부터 시행하는 통합예산안을 편성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을 작성. <p>(1) 주택건축허가 절차 개선책의 전국 33개 시에서 확대 실시에 대비한 지부실태를 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 전의 가. 제주도 지부를 제외한 전국 10개 지부의 실태 조사</p> <p>나. 주택건축허가 절차개선책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전의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p> <p>(2) 서울시에서의 건축허가 신청시 정화조 시공계약서 징구전에 대한 시정 전의 가.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정화조 시공 계약서 첨부제도에 대한 시정전의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p> <p>나.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건축허가시 정화조 시공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도록 지시</p> <p>(3) 국무총리지시 제16호에 대한 진정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p> <p>가. 진정요지 500만원 이상의 토목건설분야의 기술 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위촉 하라는 지시의 시정 요청임.</p> <p>나. 본 협회에서 제출한 진정서가 건설부에 이첩됨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접수함.</p> <p>○회신내용 국무총리지시 제16호 내용의 토목 건설분야에 건축설계 분야가 포함된것이 아니고 한국종합 기술개발공사의 경우도 건축사법에 의한 소정의 등록을 하였다면 건축사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타 회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수주 경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p> <p>다. 건설부장관의 진정에 대한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 각 부처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p>

사 업 명	세 부 계 획	시 행 기 간	사 업 실 적 및 수 행 내 용
		76. 2. 18 76. 2. 26 76. 3. 5 76. 7. 20 76. 1. 15 75. 2. 11 76. 2. 11 76. 3. 27	<p>라. 국무총리지시 제16호의 해석 기사가 제재된 건설 평론을 일괄 구입 전국회 원에게 무료 배부.</p> <p>(4) 서울시에서의 일부건축허가 유보 조치 에 대한 시정 건의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함.</p> <p>가. 건의 내용 상업지역내 건축허가 유보조치에 대 한 시정 요청임.</p> <p>나. 건의에 대한 전설부장관의 회신 접 수</p> <p>○회신 내용 관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체 방 침 등으로 적법한 건축민원을 불허 함은 부당하니 시정할것을 서울시에 지시 한 것임.</p> <p>(5) 서울시의 미판지구내 건축허가에 관한 시정 건의서를 전설부에 제출</p> <p>가. 건의 내용 미판지구에서 건축물을 전면도로에서 3M 후퇴하지 않을 때 불허하는 것을 시정 조치하여 주도록 건의</p> <p>나. 결과 건설부에서 해당 조례 승인을 아직 유 보하고 있음.</p> <p>(6)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보수요율을 제 정인쇄 전국회원에게 배부</p> <p>(7) 설계, 감리계약서, 설계계약서, 공사감 리 계약서의 서식을 결정 각 시·도지 부에서 인쇄 회원업무에 적용하도록 시 달</p> <p>(8) 건축사 및 보조원의 노임단가 제정 각 시·도 지부의 통보</p> <p>(9) 행정처분에 대한 전설부장관의 유권해 석 시달</p> <p>○공사감리대상외의 건축물을 허가 후 전 축주가 임의 착공하여 위법시 공사착공 신고미필 및 위법발생이 건축사의 책임 이 아니라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각 시·도 지부에 시달한바 다수회원의 이로 인한 행정처분에 구제됨</p>

사 업 명	세 부 계 획	시 행 기 간	사 업 실 적 및 수 행 내 용
		76. 6. 29	(10) 부당한 행정처분의 해제 건의 가. 행정처분 내용 8명의 건축사가 서울시에서의 함정 조사에 의한 업무한계 위반으로 1년 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나. 건설부 장관에게 전의 내용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 울시에서의 함정조사) 공무원이 건축 주를 가장 1급건축사의 업무를 위촉 함으로 동 업무수탁을 거절 하였음에 도 동 업무의 설계보수액을 확인 하여 주도록 간청됨에 따라 설계보수액을 써 주고 건축사가 이를 확인한 사실을 건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 요청. 다. 건설부 지시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서 동 행정처분을 해제함.
		76. 7. 31	(11) 전화가입 청약순위 제5순위를 제3순 위로 변경 가. 건축사업부용 전화가입청약 순위제 5순위를 제3순위로 조정하여 주도록 체신부장관에게 2회에 걸친 진정서 제출 ○국무총리실 대민관계 법령정비위원회 (체신부담당)에 주택건축개선책의 전국 적인 확대 실시와 관련 제3순위로 조정 하여 주도록 진정서 제출.
		76. 4. 29 76. 6. 1	나. 체신부장관으로부터 건축사 업무용 전화가입 청약순위가 제5순위에서 제3순위로 변경되었음을 확인됨.
		76. 6. 18	(12) 건축사 업무에 대한 소득표준율 인하조 정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 가. 건의 내용 1) 건축사의 소득세 과세표준산출에 적 용되고 있는 현행 소득표준율 34%를 14%이하로 조정하여 주도록 요청 하 고 현재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음. Dump 방지책과 아울러 연구용역을 체 결 연구중에 있음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재무부 장 관에게 건의서 ○건의 내용 (1) 건축 설계는 조형예술 분야에 속하는 창작활동으로서 입찰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3. 표준설계도 확대 실시에 대 비한 대책수립 4. 예산회계법 시행령 등 개정 건의		

사 업 명	세 부 계 획	시 행 기 간	사 업 실 적 및 수 행 내 용
		76. 10. 3	<p>(2) 건축설계 조형예술분야로 인정되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정시 제외되었음</p> <p>(3) 전설부장관이 인가 고시한 전축사업부 보수 기준에 의한 보수 요율은 최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p> <p>(4) 이 상과 같은 사유로 건축설계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수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 건축설계를 명문으로 삽입 개정되어야 함을 건의</p> <p>(5) 건의에 대한 재무장관의 회시 받음 ○회 시 내 용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32조 2 “마”의 규정에 의거 현행규정으로도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회시됨</p>
	(5) 관계 법령 연구	76. 2. 16	<p>(1)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관계관 회의 참석 주 관 : 건 설 부 장 소 : 협회 3층 회의실 참가범위 : 건설부 및 국립건설연구소 관계관 서울시 · 부산시 및 대구시의 건축과장 본부 및 지부임원 대한건축학회 회장 토의 내용 :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른 동 시행령안 토의</p> <p>(2)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의</p> <p>가. 전의 내용 :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부에서 초안한 시행령 (안)을 검토하고 그 중 11 개조의 규정과 별표에 대한 시정을 건의</p>
		76. 2. 18	<p>나. 전의에 대한 회신 접수 : 전의된 사항은 시행령 개정시 참고하겠다는 내용임</p>
		76. 10. 16	<p>(3) 건축사법의 개정 추진경위(별도보고)</p> <p>(4) 서울특별시에서의 주택건축허가절차 개선방안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에 시정을 건의 전의 내용</p> <p>1. 1, 2급을 분리 조를 편성하도록 한 데 대하여 국무총리지시에 의거 건설부 에서 지시된 내용대로 1, 2급 혼성으</p>

사 업 명	세 부 계 획	시 행 기 간	사 업 실 적 및 수 행 내 용
			<p>로 조를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p> <p>2. 토지형질변경을 국무총리지시와 같이 생략하도록 시정을 요청</p> <p>3. 8 근무시간내 처리하도록 한 중간 및 준공 검사를 3 근무시간내에 처리 하도록 시정을 요청, 건설부에서 서울 특별시에 본협회에서 요청한 3 개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p>
	(6) 회원 카드 정리	76. 8. 13	회원 카드 정리
2. 지도사업	(1) 서정쇄신 업무장화	76. 2. 13	<p>(1) 회원 카드 인쇄 각 시도지부에 배부</p> <p>(2) 현재 각 지부에서 정리중에 있음</p>
		76. 2. 25	<p>(1) 1976년도 서정쇄신 실천계획 수립 및 각 지부에 시달</p> <p>(2) 서정쇄신 업무 추진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부장관 지시사항 시달 및 자율 정화작업 추진을 지시</p> <p>(3) 건축법, 건축사법, 윤리규약 및 동 규정 위반시의 벌칙 사항을 유인 전국 회원에게 배부.</p>
		76. 2. 28	<p>(4) 서정쇄신 업무 추진에 관한 세미나 개최</p> <p>가. 장 소 : 회관 1층</p> <p>나. 강 사 : 회장, 감사, 건설부관계관</p> <p>다. 참가대상 : 지부감사, 사무국장</p> <p>분소장</p>
		76. 3. 20	<p>(5) 주변정화를 위한 업무 및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및 각 시·도 지부에 시달</p>
		76. 4. 6	<p>(6) 자체 정화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p> <p>가. 제 명 2인</p> <p>나. 폐업조치 42인</p> <p>다. 휴업조치 2인</p>
		76. 5. 4	<p>(7) 새 마을 성금 180.700원을 한국일보에 기탁</p>
		76. 10. 4	<p>(8) 76년도 서정쇄신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각 지부에 시달</p>
		76. 5. 12	<p>(9) 건설부장관의 서정쇄신에 관한 전국 회원 개개인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국 회원에게 배부</p>
		76. 2. 20	<p>(10) 서정쇄신에 관한 회장 친서를 전국 회원에게 배부</p>
		76. 3 ~10	<p>(11) 5회에 걸쳐 각시도 지부의 서정쇄신 업무추진 사항을 직접 점검 및 독려</p>
		76. 3. 26	<p>(12) 전국건축사 서정쇄신 추진 결기대회 개최.</p>

사 업 명	세 부 계 획	시 행 기 간	사 업 실 적 및 수 행 내 용															
	(2) 설계지침서 및 건축 통계집 발행	76. 8. 16	(13) 경북 지부 사태 별도 보고 건설부 요청에 따라 비예산 사업으로주택 설계도집을 발행 적극 회원에게 무료 배부 설계지침서로 대체하고 설계지침서는 발간하지 않음.															
	(3) 건축문답집 발행	76. 1. 17	(1) 75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건축관계 법문답집 1.800부를 인쇄 전국회원에게 무료 배부 75년도의 사업을 마무리지음 (2) 76. 5월부터 매월마다 회지 "건축사"에 건축법 질의응답을 게재 (3) 개정 건축법 및 동 시행령과 전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을 수록한 포켓용 책자를 2000부 인쇄 전국 회원에게 무료 배부 5회에 걸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함															
	(4) 제소사건의 신속한 처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개 소 자</th><th>전수</th><th>처 리 내 용</th></tr> </thead> <tbody> <tr> <td>이 사 회</td><td>1</td><td>3명제명 처분</td></tr> <tr> <td>재심청구</td><td>2</td><td>기각 2건 (제명확정)</td></tr> <tr> <td>지 부 장</td><td>5</td><td>계 류 중</td></tr> <tr> <td>계</td><td>8 건</td><td>5명제명, 5명계류중</td></tr> </tbody> </table>	개 소 자	전수	처 리 내 용	이 사 회	1	3명제명 처분	재심청구	2	기각 2건 (제명확정)	지 부 장	5	계 류 중	계	8 건	5명제명, 5명계류중
개 소 자	전수	처 리 내 용																
이 사 회	1	3명제명 처분																
재심청구	2	기각 2건 (제명확정)																
지 부 장	5	계 류 중																
계	8 건	5명제명, 5명계류중																
	(5) 기술 개발 및 기술 지도		각 지부로부터 건축사 업무 또는 협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고 회신을 하는 이외에 본회 자체에서 협회 운영 또는 회원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건설부에 질의 건설부장의 유권 해석을 얻어 각지부에 시달 협회 운영 또는 회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건수는 각각 다음과 같음 가. 질의 지부에서의 질의 55건 본회 자체에서 건설부에 질의 16건 (지부 질의 중 23건 유권해석 요청) 계 71건 나. 회신 지부 질의 회신 53건 건설부 유권해석 시달 16건 계 69건															
3. 교육훈련사업	(1) 회원 강습회 개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에 관한 강습회 교재를 인쇄 전국 회원에게 무료 배부하고 다음과 같이 강습회를 개최함 강사 : 건설부 건축과장 김창곤 · 서기관 건설부 건축계장 한규봉 계장															

사업명	세부계획	시행기간	사업실적 및 수행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최일시</th><th>개회지</th><th>개최장소</th><th>수</th></tr> </thead> <tbody> <tr> <td>76. 5. 1</td><td>부산시</td><td>동아대학교강당</td><td>750명</td></tr> <tr> <td>76. 5. 2</td><td>서울시</td><td>한양대학교강당</td><td>830명</td></tr> <tr> <td>76. 5. 8</td><td>광주시</td><td>전남도청회의실</td><td>330명</td></tr> <tr> <td>76. 5. 9</td><td>대전시</td><td>대전시청회의실</td><td>230명</td></tr> </tbody> </table>	개최일시	개회지	개최장소	수	76. 5. 1	부산시	동아대학교강당	750명	76. 5. 2	서울시	한양대학교강당	830명	76. 5. 8	광주시	전남도청회의실	330명	76. 5. 9	대전시	대전시청회의실	230명
개최일시	개회지	개최장소	수																				
76. 5. 1	부산시	동아대학교강당	750명																				
76. 5. 2	서울시	한양대학교강당	830명																				
76. 5. 8	광주시	전남도청회의실	330명																				
76. 5. 9	대전시	대전시청회의실	230명																				
4. 출판사업	(2) 학술 강습회 개최 (3) 직원 강습회 개최	76. 8. 31	<p>회원 및 보조원에 대한 학술 강습회 개최 개최일시 1976. 4. 3 ~ 4. 30 (28일간) 개회장소 회관 1층 전시실 강습과목 건축계획 구조역학 법규시공 직원 실무 강습회 개최 개최장소 협회 3층 사무실 참가대상 본부 지부 및 분소직원 강습내용 가. 행정서식 및 처리내용 해설 나. 경리실무 해설 다. 정판 및 제규정 해설 참가인원 81인</p>																				
5. 홍보선전사업	(1) 회지 발간 (2) 회원명부 발행 (1) 홍보선전사업 (2) 간담회 개최 (3) 매스컴을 통한 P·R 활동	76. 4. 20 76. 5. 12 76. 8. 20	<p>1월부터 3월호까지 매월 본문 80페이지 3.000부를 발행 전국회원과 유관기관 유 관학교 및 단체에 무료 배부하고 4월 부 터는 76년도 제 1회 임시총회에서 10페이 지 증면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4월부터는 매월 본문을 90페이지로 증면 3000부를 인 쇄 전국 회원과 유관기관 유관학교 및 유 관단체에 무료 배부</p> <p>76년도의 회원명부 2.000부를 인쇄 전국 회원에게 무료 배부</p> <p>4월부터 간설평론에 회원업무 또는 협회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관계당국에 알 려야 할사항 또는 회원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 등 매호마다 1면식 계재 하도록 계 약을 체결하고 전국 회원에게 무료 배부 하고 있음</p> <p>(1) 본부 및 서울시 지부 임원과 연석회의 를 개최하고 현안문제를 협의함</p> <p>(1) 일부관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 설계 를 경쟁입찰에 부하는 경우가 있어 건축 설계는 입찰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리는 선전문을 서울신문 공고란에 게재 하였 음</p> <p>(2) 8·18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문 을 서울신문에 게재 하였음</p> <p>(3) 76. 7. 1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p>																				

사 업 명	세 부 계 획	시 행 기 간	사 업 실 적 및 수 행 내 용
6. 국제 교류사업	(1)동남아 시찰단 파견 (2)외국단체와의 교류 및 자료 교환	76. 2. 8 ~ 76. 2. 22 76. 9. 10 76. 9. 17	<p>보수기준에 의한 요율이 마치 3배나 인상된것처럼 잘못 보도됨에 따라 관계신문사에 보도 정정 요청을 하고 정정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으며 보수 요율의 인상이 26%에 불과하다는 광고문을 76. 7. 4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음</p> <p>(1)동남아 시찰단 파견 성일영 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11명의 회원으로 동남아 시찰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하고 제 2회 한일 건축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일본 건축계를 시찰 하였으며 자유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수개국을 순방 하였음</p> <p>(2)일본 및 미주 지역 시찰단 파견 우달형 회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및 미주 지역 시찰단을 구성 76. 8. 29~ 9. 30까지 일본 및 미국 주요도시의 건축계를 시찰 하였음.</p> <p>(1)일본 건축사 회연합회 회원 34명 내한 한일건축사 제 3 차 간담회 개최 본 협회 초청으로 일본 건축사회 연합회 호리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건축사 34명이 76. 9. 10일 내한 다음과 같은 일정을 마치고 76. 9. 14일이한 하였음 가. 제 3 회 한일건축사 간담회 ○일 시 : 1976. 9. 10. 18 : 00 ~ 21 : 00 ○장 소 : 엘버서 더 호텔 ○토의 내용 : 양국건축사업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건축계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나. 호리이 회장 이규복 회장의 안내로 건설부차관 예방 다. 서울 및 대구시내 아파트단지 부산의 산업시설을 시찰 (2)자유중국 대북시 건축사공회 한국 시찰단 내한 가. 9월 18일 대북시 건축사공회 회원 및 자유중국 행정원 건축담당관(기정) 등 21명이 협회를 방문 페난트 및 판계서적을 교환하고 2시 간동안 본부 및 서울지부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음.</p>

업무보고

〈76. 1 ~10. 20〉

1. 정관 및 제규정 개정

76. 3. 26. 개최된 1976년도 제 1회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협회 정관(76. 4. 14. 건설부장관 승인) 및 윤리규약 윤리위원회 규정 회계 규정을 각각 개정하였음.

2. 임원보선

76. 3. 26. 개최된 1976년도 제 1회 임시총회에서 김두섭(김정철이사 후임) 정효환(이홍수 이사 후임) 회원이 본 협회이사로 보선 되었으며 76. 4. 16. 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을 득하고 76. 4. 22. 임원등기 변경을 완료 하였음.

3. 건설부장관 본회 순시

76. 7. 23. 김재규 건설부장관이 관계관들을 대동하고 본협회를 초도 순시함.

김장관은 협회 회의실에서 이규복 회장으로부터 협회 현장을 보고 받고 이어 전축사법 개정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 방안 실시에 따른 문젯점 시정 및 소득표준을 인하 조정등 3개 항의 견의를 받고 수행한 주택도시 국장에게 면밀히 검토조치 할 것을 지시하고 이어 협회 회판을 살펴본 후 이규복회장과 오찬을 같이함, 김재규 건설부 장관이 본협 순시에는 유근창 원호처장도 동행하였음.

4. 표창 및 공로패 수여

협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들에게 다음 내역과 같이 표창 또는 공로패를 수여함.

성명	수여일자	수요내용	비고
강봉진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강대웅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김지태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오웅석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이춘상	76. 6.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정은용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김종민	76. 3. 26	공로패	제 1회 총회 임시에서 수여
최석규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김만성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김규태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조규식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정진억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채규당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강기정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김용진	76. 3. 26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윤상봉	76. 4. 23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이홍수	76. 7. 12	공로패	제 1회 임시총회에서 수여

5. 지부 감사 실시 및 건설부 감사 수감

① 지부감사 76. 3. 4 ~ 4. 29일 사이에 11개도시 시도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76. 9. 24~10. 6 일사이에는 서울시 지부를 제외한 10개 시, 도 지부에 대한 서정쇄신 업무 점검 및 불시정밀 감사를 실시하였음.

② 건설부 감사

76. 8. 27 ~ 9. 2 일까지 일주일간 본부 및 서울시 지부에 대한 건설부(감사관실)의 불시정밀 감사가 실시 되었음.

6. 경북지부사태 수습

① 관계 당국에서 본협회 경북지부소속 박휴태, 최강호 이병택 및 김화자 등 4인의 회원이 명의대여 및 사무소 변태 운영등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음에 따라 건설부에서 현지조사(76. 3. 28 ~ 3. 30) 결과 명의 대여 및 사무소 변태 운동등 행위가 사실임이 판명되어 76. 4. 14 일자로 전기 4인에 대해 경북 지사가 등록 최소처분을 하였는 바.

②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박휴태, 최강호, 이병택 등 3인은 건설부 조사단을 상대로 관계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한 대구경찰서에 고발하여 무고한 조사단을 괴롭히는 등 사회에 물의를 계속 야기시키고 있어 본회 윤리위원회에서 76. 5. 20 자로 제명처분을 함께 동시에 76. 5. 20 자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 되었음.

③ 박휴태, 최강호, 이병택 등 3인이 건설부조사 단을 대구경찰서에 고발함에 따라 대구경찰서 형사진이 상경관계자에게 연행을 요구할 뿐 아니라 수차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무고한 관계자를 괴롭히고 있어 본회에서는 76. 5. 14 치안 본부장에게 동사건을 서울로 이송하도록 공한을 발송한바 76. 5. 29 대구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 이송이 불가 하다고 회신됨에 따라 76. 6. 2 회장과 본회 법률 고문이 직접 대구지방경찰청 검사장을 방문 동사건의 서울 이송을 요청하였든바 76. 6. 9. 동사건이 서울지검으로 이송되어 서울지검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무혐으로 수사가 종결 되었고 또한 본 회에서는 박휴태, 최강호, 이병택 3인을 76. 5. 18 자로 종로 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④ 박휴태 등 3인이 면허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나 수차에 걸친 법원심의 끝에 상기 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처분 하였음.

7. 조편성 현황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에 의한 각 시, 도지부의 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전국시별 조편성 현황

〈괄호내는 인원수〉

시도별	시구군별	2인조	3인조	4인조	5인조	6인조	계
부산직할시 경기도	부산	45	16		6		61(199)
	인천시				3		6(30)
	수원시						3(15)
	의정부시						
	안양시			1	1		2(11)
	부천시	1	1				2(7)
	성남시					2	2(12)
강원도	계						15(75)
	춘천시				2		2(10)
	원주시					1	1(5)
	강릉시						1(5)
	속초시				1		1(4)
	계						5(24)
	충주시	2	1	1			4(15)
충북	충주시		1				1(4)
	제천군	2					2(6)
	계						7(25)
	충남						
	대전시		1	10			11(54)
	천안시				1		1(5)
	세종군	1					1(3)
전북	보령군	1					1(3)
	대덕군		1				1(4)
	계						15(69)
	전주시	2	2				4(18)
	군산시		2				2(8)
	이리시			1			1(5)
	계						7(31)
전남	광주시	1	11				12(58)
	목포시			2			2(10)
	순천시			1			1(5)
	여수시			1			1(5)
	계						16(78)
	경북						
	대구시		16	7			23(127)
경남	포항시				1		1(7)
	경주시						1(5)
	김천시	1					1(3)
	안동시	1					1(3)
	계						27(145)
	마산시				4		4(20)
	울산시		1	3			4(19)
제주도	진주시		1	2			3(14)
	삼천포시	1					1(2)
	충무시	1					1(2)
	진해시		1				1(3)
	김해군		1				1(3)
	계						15(63)
	제주시	3		1			4(14)
남제주군							1(4)

8. 회관수리 및 대지구입

① 제 1회 및 제 2회 회관전립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관 수리공사를 실시하였음.

공사명	공사금액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정화조 이설공사	880.000	76. 5. 15	76. 5. 21
3, 4층 및 수위			
실확장 목공사	840.000	76. 5. 15	76. 5. 23
상수도이설 공사	80.000	76. 5. 15	76. 5. 22
회관외부도장공사	5.568.000	76. 5. 15	76. 5. 31
현관및화단 석공사	811.800	76. 6. 22	76. 7. 4
합계	8.179.800		

② 제 1회 및 제 2회 회관전립위원회 위임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관전립용 대지를 구입 하였음.

다음

-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56~2
- ② 부동산의 표시 : 대지 64평, 건물 목조 3동(평가건)
- ③ 매입가격 : 83.200.000원
- ④ 매입년월일 : 1976. 8. 19.

9. 대지보상 및 새마을 성금 전달

무교로 확장으로 본 협회 회관대지 76평 중 15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따라 편입 대지 보상금으로 6.300.000원을 평당 420.000원) 76. 7. 12 수령 하였으며 동 일자로 새마을 성금 1.000.000원을 종로 구청장에게 전달하였다.

10. 덤플링 방지책 연구

76. 8. 13 개최된 제 1회 전축연구위원회의 합의에 의거 이사회에 전의된 바에 따라 회원업무 활동 질서 확립 및 권익옹호의 경인 덤플링 행위의 근절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덤플링 방지책 연구 용역제약을 체결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금년 말 까지 동 연구를 완결하여 7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덤플링 방지책과 아울러 완결하여 7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덤플링 방지책과 아울러 표준설계도 확대에 따른 대책도 병행 연구중에 있음.

주택건축 허가절차개선 방안 추진경위 보고

일자	관련부서	처리 내용			
75. 12. 15	건설부	주택건축허가절차 개선방안 실시 요강 하달. ① 660M ² (200평) 미만의 단독 주택에 대해 연대책임 건축사 5인으로 조편성을 하며 건축 허가로부터 준공에까지 모든 절차를 해당 연대책임 건축사가 이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함. ② 76. 1. 1부터 수원, 전주, 진주등 3개시에서 시범 실시함. 각 시, 도 지부장에게 동 요강 시달. 동방안을 연구하여 실시지역에서 도 확대 실시에 대비토록 함.	76. 5. 27	건설부 협회	을 들음. 건설부 주택도시국장 내방 ① 지방지부 순시후 본 협회를 내방한 자리에서 동방안에 대한 시정 전의. ② 서울지부 순시
75. 12. 20	협회		76. 6. 11	협회	동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회의. 일시 : 76. 6. 11 14:00~ 장소 : 충남지부회관 참석자 : 본회회장 · 임원 · 사무처장 · 기술과장 · 각시도지부사무국장. 토의내용 : 시범실시지구에서 경위 및 문제점제시 상호토론, 전의안채택
76. 1. 13	건설부	춘천시를 시범실시지구로 추가지정 (계 4개소)	76. 6. 14	협회	동방안 확대 실시 대비한 건의서 제출 (건설부) 건의내용 ① 5인건축사 연서절차 간소화 ② 접검표 (체크리스트) 서식 간소화. ③ 허가 준공의 즉결처리 ④ 합동사무소는 불가 ⑤ 법적 뒷받침 (사법개정)
76. 1. 17	협회	동방안에 대한 각지부 의견 조회 (동방안에 대한 문제점, 전의 사항등을 수집, 건설부에 전의하기 위함)	76. 6. 16	건설부	주택건축허가개선책 (확대) 실시요강 시달.
76. 2~3	건설부	건설부 관계관 시범실시지구 순시			
76. 5. 24~26	건설부	건설부 주택도시국장 10개지부 순시 (제주지부 제외) 시범실시지구 및 미실시지구 지부를 순시 (협회장 동행) 하며 정부방침 피력 및 지부 의견			

		내 용 : 실시지역—전국35개 시 실시시기 : 76. 7. 1 ~ 업 무 : 660M ² (200평) 미만의 단독주택, 병용주택 조편성 : 1, 2 급 혼성 3 ~ 5 인 합동사무소 1 급 업무해당시 : 서울, 부산, 대구 1 급 3 인이상, 기 타지역 2 인이상 혼성		에 접수를 대행하고 있는바 서 울시에서 이를 민폐대상 새사례 로 지적한데 대하여 다음 사항 을 전의
76. 6. 18	협 회	동실시요강에 대한 시정전의서 제 출(건설부) ① 조편성 이원화 부당 ② 공동 또는 합동사무소 부당	76. 10. 현 협 회	① 서울시지시에 의한 착공·중간 준공검사 조사복명서 제출 제도 의 폐지 ② 서울시의 요청에 의거 서울지 부에서 서류 일괄접수 제출제의 폐지 ③ “주택건축허가제도개선방안” 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또는 폐기
76. 6. 20~21	협 회	긴급 전국지부장회의 동학대 실시요강에 대한 전의안체 택	76. 10. 23 협 회	전국 33개시 및 6개군에서 실시 하고 있으며 참가인원 : 173개조 727명 서울시의 동방안 실시에 따른 조 편성에 관한 시정을 건설부에 전 의
76. 6. 21	건 설 부	동방안 확대 실시에 따른 관계관연 석회의 각시·도건축행정담당관과 본 회 임원, 각시·도 지부장 연석 회의에서 수정시행 재전의.		서울시에서 동 실시요강을 무시 하고 76. 11. 1부터 강남지구 를 시범 선정 실시함에 급별 조 편성을 하도록 한데 대한 시정 전의
76. 6. 23	건 설 부	주택건축허가 개선책 실시 추가시 달. 국무총리지시 제 8호 내용 ① 토지의 형질변경 불요—건축허 가 ② 서울특별시는 76. 12. 31 이전 수임태세 완료후 77. 1. 1 부 터 시행한다.	76. 10. 25 협 회 76. 10. 25 협 회	회장, 주택도시국장 방문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 회장, 서울지부장, 서울시 도시 정비국장 방문코 서울시의 조편성 방침등 시정문제 협의
76. 7. 23	건 설 부	건설부장관 내방 건설부장관이 본 협회를 내방한 자리에서 동방안에 대한 문제점, 전의사항과 건축사법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전의하고 전 의문을 별도로 전달함.	76. 10. 28 협 회	회장, 건설부장관 초청으로 안동 댐 준공식 참석시 서울시 조편성 에 대한 시정 전의문을 건설부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 전달함.
76. 9. 17	협 회	서울시의 민폐대상업무 새사례체 택 및 추진지시에 대한 전의 (건 설부) 현재 서정쇄신책의 일환으로 건 축허가신청서 및 준공검사 신청 서 등은 서울지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부에서 판	76. 10. 29 협 회 76. 11. 1 건 설 부 협 회	회장, 국무총리실 방문코 서울시 「조」편성문제에 대한 시정 요청 하고 관계자료 수교함. 회장, 서울시지부장, 건설부에서 건설부, 서울시 관계자들과 회동 하고 서울시「조」편성문제를 협의 시정을 요청.

2. 1977년도 사업계획

(기본방향)

(1) 회원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온갖 장해 요소를 제도 개선관계 법령의 개폐추진 또는 관계 판서와의 대화를 통한 협조 체제 강화등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는데 결력을 다한다.

(2) 제도적인 제약, 관계법령의 미비 기타 내적 외적 여건 불미로 침해되고 있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회원 소득의 실질적인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을 모색하여 이의 일환책으로 공제회 또는 복지회의 통일적이고도 합리적인 설립과 운영 방안을 마련 한다.

(4)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국내외 각계의 관심을 끌며 확고한 단체로 성장한 본협회의 대외 이미지를 한층 더 부

각시키고 공신력과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홍보 선전사업 및 국제교류 사업의 강화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한다.

(5) 주변 정화등으로 새로운 전축 사상을 정립하고 각종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는 서정쇄신 업무의 계속적인 추진과 물자절약 운동 및 새마을 사업 적극 참여와 지원 활동등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효율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6) 통합예산 집행에 부응하는 본부 및 각 시, 도지부, 분소의 행정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지도 감독체제를 확립하면서 76년도 사업 계획중 77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77년도에는 모두 완결하도록 총력을 경주한다.

(7) 회원 숙원 사업인 본부 및 각 시, 도지부의 회관건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 한다.

1977년도 사업 계획

사업명	세부계획	수행방법 및 내용	시행시기	비 고
조사연구 사업	(1)건축사업부 수행 및 회원사무소 운영 상의 문제점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회원업무수행상 파생되는 지역별 업무량규모별 등의 문제점을 일정기간중 조사하여 이에따라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회원사무소의 규모별 지역별 운영 실태 조사와 개선책 연구	상 하 반 기	
	(2)공사감리 업무상의 문제점 조사 및 개선책 연구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 무보수 감리행위 이에관련된 부당한 행정처분 실태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감리 업무 수행 방안을 수립	1 월에서 12월	
	(3)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실시실태 조사 및 시정책 연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 방안의 실시 실태를 매월 지역별로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 대정부 절충.	매 월	
	(4)덤핑방지책 연구	덤핑방지책을 연구하여 일정 규범을 작성 전국적으로 실시.	1 월	월 76년도계속사업
	(5)관계법령 연구	회원업무 및 협회 운영에 관련되는 관계 법령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대정부건의	1 월에서 12월	
	(6)세제 연구	소득표준율 조성완결	3 월	76년도의계속사업
	(7)공제회 설립 및 운영의 현실화방안 연구(회원복지)	회원복지 사업의 일환책으로 전국규모의 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따르는 회원 복지 연차사업 계획을 수립.	3 월	
	(8)제도개선방안연구	협회지부 분소 행정 체제의 개선방안등을 계속 연구 반영	1 ~12월	
지도사업	(1)서정쇄신업무 강화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본부 및 각시, 도지부 단위로 서정쇄신업무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새 전축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율정화 운동을 계속하여 각시도	1 ~12월	

사업명	세부계획	수행방법 및 내용	시행시기	비 고
교육훈련사업	(2) 물자절약운동 전개	지부의 동업무추진 상태를 수시 점검. 정부 시책에 호응 본부, 지부, 분소의 예산절약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회원 사무소의 물자절약 운동을 유도 계몽	1 ~12월	
	(3) 윤리위 활동 강화	적발 제소된 비위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제재 강화		
	(4) 건축법 문답집 발행	76년도중 회지(건축사)지에 매월 수록한 건축법 문답집을 단행본으로 발행하여 회원에게 무료배부 (77년도분은 계속 회지에 매월 수록)	1 월~ 4 월	
	(5) 기술 개발 및 기술지도	건축연구 위원회의 운용 적극화로 기술 개발 및 지도업무를 강화하고 회원의 관계법규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기하도록 함.	1 월~12월	
	(6) 보조원 관리 지도	보조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회원사무실에서의 보조원 관리 및 협회 등록 업무를 효율화 시킨다.	1 월~12월	
	(7) 새마을 사업 참여 및 지원 적극화	협회, 회원의 새마을 사업 적극 참여를 권장 계몽지도 하고 지부별로 동사업 지원책을 마련 하도록지도 각종 법규에 대한 순화 강습회(5개 도시)	1 월~12월	
	(1) 회원 강습회 (2) 직원 강습회	본부, 각 시, 도지부 및 분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강습회 (2 일간)	6 월~ 7 월 1 월~ 2 월	
전시사업	(3) 지부주관회원 강습회 지원	각 시, 도 지부에서 연간 1회씩 개최 하기로 예산에 반영된 각 시, 도지부 회원 강습회에 대한 지원 관리	각지부별로 개최시기결정	
	(4) 학술 강습회 (1) 전설자재 상설 전시관 개설	관계 법규등에 대한 회원 및 보조원 학술 강습회 회관 전립용으로 매입한 대지에 상설 전시관을 전립하고 40여 자재생산업체의 생산품을 상시 전시	4 월~ 5 월 개 관	비예산사업 전시관 전립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전시관에서 발생하는 수의 품 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수입 함.
홍보선전사업	(2) 전재자재 총람발간	총량 2.000본을 발행하여 전국회원에게 무료 배부	1 월~12월	비예산 사업
	(1) 홍보 선전지 발간	76년도의 계속 사업으로 홍보 선전용의 계약을 체결 월 1회씩 홍보 선전지를 발행 회원 및 유관 기관에 무료 배부		
	(2) 각종 간담회	회원 또는 관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당면 문제등을 토의하는 간담회 4회	매분기별 1회	
출판사업	(3) 기타 홍보 선전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홍보 선전 활동(수시)	수 시	
	(1) 회지(건축사) 발 행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회원 및 유관기관 등에 무료 배부(원고료의 대폭 인상으로 건축사지의 내용 충실 및 질적 향상을 도모)	매월 1회	
	(2) 회원명부발간 (3) 도서 실 개설	회원명부 3 000부를 발행 회원들에게 무료 배부 본부에 소장한 각종 도서와 신간도서 구입 및 연중	3 월	

사업명	세부계획	수행방법 및 내용	시행시기	비고
국제교류 행사	(1) 한일 건축사 제 4 차 간담회 (2) 해외 시찰단 파견 (3) 세미나 개최 (4) 자료 교환 (1) 협회상 시상 (2) 회장배 쟁탈 시, 도지부대항 축구대회	되는 외국 간행물과 회원 1인당 도서 1권 기증 운동을 벌여 수집되는 도서 2,000~2,500부를 회원들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회관 1층 전시장에 도서실을 개설 운영. 일본 건축사 연합회 주최로 동경에서 개최(임원 및 회원들로 대표단 구성) 회원들로 해외 시찰단을 구성 파견 해외 저명 건축계 인사 초빙하여 세미나 개최 외국 건축사 단체 및 유관 단체와 자료 교환 1. 작품대상 시상(1점) 2. 유공 회원 대상 시상(1인) 으로 선수단을 편성 회장배 쟁탈 축구대회 개최 본부 및 11시도지부의 회원 일직원.	5 월 8월~9월 1월~12월 3월~5월 1월~12월 77정기총회 9월~10월	

물자절약

법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지도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출선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 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